###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

- 가.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(내부통제 개념을 재정립하고, 이사회 업무 명확화)
- 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금융범죄 정의 명확화)
- 다.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·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(부동산 PF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)
- 라.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(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한정)

# 4. 금융투자협회 규정\*

가.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 (2025/1/23 개정 · 2025/1/24 시행)

# 1) 개정 이유

- □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」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기 위함
  - '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(2023. 6. 22, 금융위원회)' 등을 반영한 개정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시행(2024. 1. 2 개정, 2024. 7. 3 시행)

### 2) 주요 내용

- □ 내부통제 개념 재정립(제3조)
  - ─ 지배구조법 취지에 따라, 내부통제 개념 정의상 '재무보고의 신뢰성 등'을 '건전 경영 및 주주·이해관계자 보호 등'으로 변경

## □ 이사회 업무 명확화(제6조)

- 지배구조법 제15조에 열거된 이사회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
  - 이사회는 내부통제기준의 제정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, 내부통제 정책의 수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,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의 이행·감독, 책무구조도(지배구조법 제30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책무구조도)에 대한 의결, 그 밖에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

<sup>\*</sup>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금융투자협회 규정 및 금융투자협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#### □ 내부통제위원회 설치(제6조의2 신설)

- 이사회내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, 구성, 역할, 권한 등 제시
  - 내부통제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고,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함
  -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의 기본방침 및 전략 수립, 임직원의 직업윤리와 준법정신을 중시하는 조직문화의 정착방안, 지배구조내부규범의 마련 및 변경, 내부통제 기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함

#### □ 대표이사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등 구체화(제7조)

-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및 이사회 보고사항 등 제시, 책무구조도 마련 및 이사회 의결 의무 반영
  -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사항으로서 책무를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여야 함
  - 대표이사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(외국 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해당 외 국금융투자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함

### □ 준법감시인의 역할 명확화(제8조)

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

### □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 구체화(제10조)

책무구조도에 따라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조치 및 대표이사 보고사항 등제시

### □ 舊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조항 삭제(제11조 삭제)

一 舊 지배구조법시행령 및 감독규정상의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는 舊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 폐지에 따름

### □ 내부통제 관련 보고대상 명확화(제24조)

임직원의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관련 보고대상을 '준법감시인'에서 '상위 결재권자, 해당 업무에 대한 책무를 부여 받은 임원 등'으로 변경

#### □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 개선(제27조)

- 책무를 부여받은 임원이 법규준수여부 점검 및 조사  $\cdot$  제재 요구  $\cdot$  내부통제 개선 등 필요조치 시행 의무 반영
  -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소관 조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이 관계법령등 및 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 하여야 함

•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·부당행위를 발견한 경우 회사 또는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 등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 하도록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사·제재조치 요구 및 내부통제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

### □ 다자간매매체결회사(넥스트레이드) 출범 예정 반영(제40조)

'넥스트레이드 시스템'이란 넥스트레이드가 개설한 시장에서의 거래 등을 위하여 넥스트레이드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고 규정

### □ 대표주관업무 수행시 참고사항 중 일부 삭제(제95조)

─ 금융감독원의 「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」이 규제 목적 달성 등의 이유로 폐지(2013. 2. 1)되어 이를 반영

## 나.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모범규준 (2025/1/24 개정 · 시행)

# 1) 개정 이유

- □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,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, 협회 관련 모범규준 상 금융범죄 고발 기준의 전면 개정하기 위함
  - ─ 금융감독업무설명회(금감원, 2024. 3)를 통해 금융사고 적시대응을 위한 보고 · 관리체계 개선 발표
  - 회사 판단에 따라 금융범죄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되, 중대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의무를 부여하여, 중대 금융 범죄에 대해 미고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

## 2) 주요 내용

# □ 금융범죄 정의 명확화(제1-2조 제1항 제3호)

- (기존) 특정경제범죄법,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하여 범한 죄에 대한 해석에 있어 금융범죄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 될 우려
- ─ (개정) 직무와 관련하여 회사 · 금융거래자의 손실 초래 또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법, 형법,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범한 죄로 명확화

#### □ 고발업무 총괄부서 지정 등 의무화(제4-1조)

- (기존) 회사내 보고 절차만 규정되어 있어 고발업무 절차 상 구체성이 미흡
- (개정) 고발업무 관련 총괄부서 지정 및 운영기준(고발 대상, 절차 및 시기 등)마련 의무 부여

#### □ 금융범죄 고발 기준 개선(제4-2조)

- (기존) 고발 원칙, 회사 판단(심의 절차 필요)에 따라 모든 사안에 대해 미고발이 가능하여 중대 금융범죄 미고발사례 발생 우려가 있음
- (개정) 금융범죄에 대한 고발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되, 중대한 금융범죄는 고발을 원칙으로 함
  - '중대한 금융범죄'는 i) 특정경제범죄법 상 죄, ii) 투자자 피해 초래 등 중대 금융범죄(제3자 고소·고발, 자수의 경우 적용 배제 가능)

# □ 고발 절차 및 후속 조치 구체화(제4-3조)

─ 고발 필요성 검토, 심의 · 의결 조직 안건 상정, 결과에 따른 금융사고 보고 등 절차 및 후속 조치 구체화

### □ 기록 · 유지 사항 추가(제4-4조)

— 고발 여부 관련 검토, 심의 · 의결 의사록 등

# 다. 부동산PF 수수료의 공정성 ·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한 모범규준 (2025/1/23 제정 · 2025/1/24 시행)

### 1) 제정 이유

- □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를 부과하고, 위법 · 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PF 금융의 공정성 ·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
  - 2024년 11월 18일 금감원에서 배포한 '부동산PF 수수료 제도개선 주요 내용'을 반영하여 확정한 기준으로서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 내용으로 적용
    -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등에 반영하여 202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

### 2) 주요 내용

### □ 수수료 부과대상을 용역 수행 대가로 제한(제4조)

─ PF 금융에 수반되는 용역 대가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, 별도 용역 제공이 없는 수수료는 폐지하는 한편, 만기연장시 용역 제공없이 반복 수취하는 수수료(예: 주선·자문수수료) 부과 제한

# □ 수수료를 유형별로 표준화하는 등 부과 체계 정비(제5조)

- ─ 수수료 산정・부과 기준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수수료 정의와 범위를 표준화하여 수수료 항목을11개로 통합・단순화
  - (예시) 약정변경·책준연장·약정수수료 → 약정변경수수료, 사업성검토·자문수수료 → 자문수수료

- □ 차주에게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을 확대(제6조, 제7조)
  - ── PF 용역수행 내역 등에 대한 사전・사후적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용역 이력관리 체계화를 유도
    - (용역계약 체결시) 용역수행 계획 제공 → (용역기간 중) 실제 용역수행내역 및 세부진행상황 내부 이력관리 → (용역완료시) 용역 결과보고서 제공
- □ PF 수수료 관련 금융회사 자율통제 기능 강화(제9조)
  - 법 위반소지 차단, 소비자권익 제고 등을 위해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기본 내부통제 원칙을 제정 · 운영
    - 「금소법」상 금지행위(꺾기 등) 방지. 「이자제한법」상 최고이자율 준수 등 법 위반소지 차단
    - 수수료 관련 조직구조, 적정성 검증절차, 수수료 종류 및 정의 등 체계에 관한 사항 등 기본 내부통제 원칙 제정
- 라. 책임준공확약 토지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 (2025/1/2 제정 · 2025/1/31 시행)

### 1) 제정 이유

□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신탁 업무를 수행 시 준수해야 할 업무처리절차를 정하고 책임준공의 무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함

### 2) 주요 내용

- □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 확보(제3조)
  - -- 신탁계약 체결 시 준공 관련 필수사업비를 확보하였는지 여부를 사업성 심의 절차 시 점검
    - (필수사업비) 토지취득, 공사, 인허가, 분양, 제세공과금, 금융 관련 비용 등
- □ 손해배상 범위 한정(제4조)
  -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으로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원리금 회사가 지연됨으로써 직접적으로 입게 된 실제손해액으로 한정
    - (실제손해액) 대출원리금 상환금 약정, 대출금융기관의 기회비용 배상 등은 금지
- □ 책임준공의무 이행기간 합리화(제5조)
  - 이행기간 명확화명확화(+6개월 또는 공사 기간의 100분의 20 중 긴 기간), 불가피한 경우 협의를 통해 연장, 시 공사 책준기한 연장 시 신탁사도 동시에 연장

# □ 시공사 교체(제6조)

- 원활한 시공사 교체가 가능하도록 관련 필요사항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
  - 시공사 포기각서 징구, 대출금융기관 협조, 신탁사 판단에 따른 추가 공사비 집행

### □ 공사비 지급관리(제7조)

- 신탁사의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의무사항 명시
  - 기성확인 후 지급, 공사비는 공사관련 비용의 지급재원으로 사용, 공사관련 보험금 및 이행보증금은 공사비에 투입된 신탁사의 고유자금 상환에 우선 사용

# □ 분양가격 조정(제8조)

─ 필요 시 대출금융기관과 신탁업자는 상호 동의하에 분양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탁계약서 등에 명시

# □ 사업성 평가 절차(제9조)

- 일반 토지신탁과 구분되는 별도의 내부 사업성 심의기준 마련 및 운용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